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유은혜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기타 교육과정 운영 상 필요에 따라 수업일수를 감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현행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수업일수를 18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감축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 운영 상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때 학교의 장이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천재지변이나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 상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은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 감축 가능(안 제8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제8조제2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① (생략) ②대안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다만,</u> <u>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교육</u> <u>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u> <u>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u> <u>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u> <u>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u> <u>보고하여야 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교육기획보장과	
연락처	(044) 203 - 6520